

의안번호	2221338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3.
추 계 번호	26C4754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4항 (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·경 영의 장려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1. 청년·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2.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의 개최 및 공연예 술인과의 연계 지원 3. 소규모공연공간의 안전·시설환경 개선 지원 4. 소규모 공연의 홍보·유통 지원 5. 그 밖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업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4항 (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·경 영의 장려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소규모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(안 제10조제4항)

-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그를 기초로 추가로 관련 예산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지원규모 등을 추정하여 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따르면 안 제10조제4항 각 호와 관련한 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

【표 1】 안 제10조제4항 관련 예산 지원 현황(2026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안 제10조제4항 각 호	사업내용	예산액
1. 청년·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	청년교육단원 운영	12,338
	K-Art 청년 창작자 지원	18,000
	국립청년예술단 운영	6,839
2.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의 개최 및 공연예술인과의 연계 지원	해당 사항 없음	
3. 소규모공연공간의 안전·시설환경 개선 지원	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	309
	공연장 안전 선진화	4,392
4. 소규모 공연의 홍보·유통 지원	중소규모 공연 유통	27,770
5. 그 밖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	해당 사항 없음	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